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원공설운동장 관람시설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추정금액 : 금329,710,000원

(추정가격: 172,681,818원+ 부가세: 17,2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 139,760,000원)

라. **기초금액 : 금189,950,000원(금일억팔천구백구십오만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사업개요 : 관람석 철거 및 재설치, 테니스장 정비, 안전휀스 설치 등

사. 공사현장 : 칠원읍 용산리 일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7. 09.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07. 14.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14. 11:00 함안군입찰집행관 PC

※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토목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익계약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서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익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수익계약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액(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8,685,796원	1,404,841원	1,856,187원	184,596원	4,341,387원	898,785원	0원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이 아니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055-580-2733)

나.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동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확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1,404,841원	1,856,187원	184,596원	4,341,387원	898,785원	0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 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 타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바. 낙찰자는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함안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함안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함안군 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함안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055-580-2183) 및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 → 소통참여 → 신문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580-2183), 설계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은 문화공보체육과 체육시설담당 안철현(580-2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당한 요구 등의 부패·비리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함안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80-206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7. 08.

함안군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붙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안군 재무관 귀하